

2026년 「여수형 청년임대주택」 입주자 모집 공고

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
「여수형 청년임대주택」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3월 12일

여 수 시 장

1 모집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6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

나. 모집인원

1) 선정인원 : 22명

○ 여수시민 16, 신혼부부 3, 우선공급 1, 전입예정 2

2) 예비자 선정 : 추첨을 통해 예비자를 선정하여, 입주 포기자 및 중도
퇴거자 발생 시 입주 기회 제공

○ 예비자 : 11명(여수시민 8, 신혼부부 2, 전입예정 1)

※ 예비자가 최초 입주할 때 계약기간은 기존 입주자의 계약 만료일 까지 포함

3) 선정방법 : 적격자 중 현장 공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

○ 현장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, 본인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

※ 대리인 한 명당 한번 추첨 할 수 있으며, 신청인 본인이 추첨에 참석 할
경우 타인을 대리할 수 없음

4) 추첨예정일 : 2026. 4. 28.(화) 14:00 여수시청 문화홀

※ 추첨일은 2026. 4. 15.이후 여수시청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며,
추첨 일정과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다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인 청년 또는
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인 (예비)신혼부부 중
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

- 1) (주소)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
- 2) (소득) 연소득 (청년)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
(신혼부부)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

※ 구체적 기준은 『3』 자격요건』 (p.3) 참고

라. 접수기간 : 2026. 3. 19. ~ 4. 1.(10일간)

※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마. 접 수 처 :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(여수시 시청동 1길 23, 2층)

바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

- 방문접수는 근무일 10:00~17:00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

사. 제출서류 : 필수제출 8종, 추가제출(해당 대상자)

- 신청 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, 서류 제출 후 정정·취소 불가

※ 제출서류 목록은 『4』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』 (p.6) 참고

아. 주요내용

1) 지원내용 : 임대보증금 전액(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)

2) 지원기간 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
※ [여수형 청년임대주택]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아이 1명당 2년씩
소득 규모 관계없이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

※ 예비자가 최초 입주할 때 계약기간은 기존 입주자의 계약 만료일 까지로함

3) 입주예정 : 2026년 5월 중

4) 선정방법 :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

자. 문의 : 건축과 건축행정팀(☎061-659-4092)

※ 신청기간 내 전화연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여수시 해석에 따름

2 공급 임대주택

가. 대상시설 : 여수부영9차 아파트(여문2로 61)

나. 공급호수 : 22호(전용면적 49㎡, 20평형)

다. 동호지정 : 입주예정자 선정 후 추첨을 통해 지정

○ 입주예정자 간 동호수 임의 변경 불가

라. 입주예정자는 지정기간 동안 사전점검 후에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시에 통보하고, 입주 결정 시 30일 이내에 여수시 지정계좌로 관리보증금 100만원 입금하여야 함

마. 입주포기 시 예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입주기회 제공

바.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단지로 내·외부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며 단순 노후에 의한 시설 보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, 신청 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※ 세대별로 수선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입주자는 이의신청 및 추가 보수는 불가함.

3 자격요건

가. 신청자격 (공고일 기준)

1) (연령)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인 청년 또는

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(예비)신혼부부

※예비 신혼부부 : 2026.12.31이내 결혼 예정이면서 예식장계약서로 증빙 가능한 자

2) (주소)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

-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

3) (소득) 청년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신혼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

※ 기준중위소득 150%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35호, 2025. 8. 1.]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기준중위소득 150%(원/월)	3,846,357	6,298,938	8,038,554	9,742,107	11,335,079

나. 우선공급대상자(「여주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」 제3조)

- 1) 양육시설,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
- 2)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

다. 지원 제외대상 (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- 1)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
- 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
- 3)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사업 수혜자(수혜가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)

- 행복주택, 디딤돌대출(주택구입자금), 버팀목대출(전세자금), 주거안정월세대출, 전세임대(국민임대, 공공임대 등)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
-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,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, 귀농귀촌주택용자지원,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
- 타지역 주거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등
 - ※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제외
 - ※ 행복주택, 청년 월세지원 등 입주자 선정 후 수혜 종료되는 경우 지원 가능

- 4)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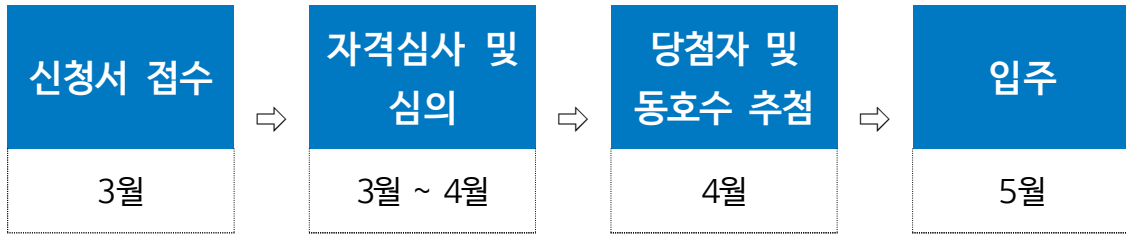
라. 취소사유 및 영구 입주 제한

- 1) 주거 실태조사 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
- 2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
(전입신고 이후 주소 미 유지 포함)
- 3)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4)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
- 5)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- 6)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 완료해야하며, 기한 내 미퇴거시 1일 당 1만원을 관리보증금에서 차감

4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

가. 선정절차



나. 신청방법 :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

1) 접수처의 근무일(월~금요일)(10:00~17:00)

※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

2) 신청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, 신청접수 마감 이후 서류
정정·취소 불가

다. 접 수 처 :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(여수시 시청동1길 23, 구보건소 2층)

라. 접수기간 : 2026. 3. 19. ~ 4. 1. (10일간)

마. 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신청접수 마감 이후 취소·정정이 불가능하며,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2)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됩니다.
- 3)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.
- 4) 추첨일 발표 등 일정은 시 내부 심사 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바. 문의 : 건축과 건축행정팀(☎061-659-4092)

※ 신청기간 내 전화연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. 제출서류 ※ 사업 공고일(2026. 3. 12.)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

1) 필수 제출 서류 ※ 열람용 발급서류 접수 불가

제출 서류	발급방법	발급처
신청서 및 서약서	· 공고문 하단 서식 참고	서식1, 서식2
개인정보제공동의서	· 공고문 하단 서식 참고 · 신청인 및 세대원 전체 서명	서식3
주민등록표 등본	·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·주민번호 포함 · 등본이 분리된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	(오프라인)행정복지센터, (온라인)정부24
가족관계증명서	·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	
근로소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· 기간 : 2024. 1. ~ 12. · (예비)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·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(소득사실없음) 제출	국세청, 정부24, 행정복지센터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· 가입이력 전체 필요 · 세대원 각각 제출	건강보험공단
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	· 기간 : 2025. 1. ~ 12. ※ 세대원 각각 제출	건강보험공단
재산세 과세 증명서, 취득세 증명서	· 민원실 방문하여 '전국 재산세'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· 세대원 각각 제출 ·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취득세증명서 모두 제출 ※ 청약홈에서 발급한 '무주택확인서' 제출 가능	민원실(방문), 행정복지센터, 청약홈

2) 추가 제출 ※ 열람용 발급서류 접수 불가

대상자	제출 서류	제출방법	발급처
대리인 신청 시	대리인 신분증	· 사본 제출	-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	· 인감증명서 제출 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· 본인서명확인서제출 시 위임장에 본인 서명	정부24, 민원실, 행정복지센터
	위임장	· 신청인 작성 원칙	-
예비 신혼부부	예식장 계약서 사본	-	계약 예식장
신혼부부	혼인관계증명서	-	정부24, 민원실, 행정복지센터
우선공급대상자	보호종료확인서	-	행정복지센터, 시청(여성가족과)
	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	-	(오프라인)병원, (온라인)정부24

입주자격 검증	■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,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검증 후 입주예정자로 선정합니다. ■ 또한 입주예정자 중에서 ③ 자격요건 ‘나. 지원 제외 대상’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. ■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사업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 (다만,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하는 청년 또는 신혼 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을 시 대상자 선정 가능) ■ 국세·지방세 등의 납부 여부 확인 후 체납이 있는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다.
임대주택 거주기간	■ 이 주택의 사용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.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당시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.
연장신청 및 갱신계약 기준	■ 연장신청 :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■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. 지원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. ■ 만약,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보증금에서 1일당 1만원씩 차감하며, 이후에도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. ■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여수시 건축과로 입주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담당자와 함께 퇴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정산하게 되며, 정산금액은 관리보증금에서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반환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계약안내	■ 계약 이후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될 경우, 즉시 그 내용을 우리 시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. 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<u>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</u> 관리비·사용료가 부과됩니다. ■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. ■ 명의변경 및 동·호 변경은 불가합니다.

관리비 및 예치금	■ 입주예정자는 관리보증금 100만원을 입주지정일 전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 - 관리보증금은 퇴거시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관리비·사용료 정산 후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 ■ 해당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. - 관리비 : 일반관리비, 청소비, 경비비, 소독비, 승강기유지비, 수선유지비 등 - 사용료 : 전기료, 난방비, 수도료, 기타 등
입주절차	■ 입주예정자는 시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전 점검 후 최종 입주의사를 알려야 합니다. ■ 사전점검 시 내부 시설보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시설보수는 타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■ 입주예정자 선정 확인서를 지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절차(선수관리비 개별 납부, 입주자 카드작성, 시설물 점검 등)를 거쳐 열쇠를 교부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. ■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관리보증금 완납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.
기타사항	■ 입주예정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(가족동반 또는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인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 전입신고) ※ 전입신고 완료 후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 건축과 건축행정팀 제출 ■ 입주자는 사업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주택 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 ■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■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. ■ 세대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행 또는 부영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부과 됩니다. ■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공주택특별법」 및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민법」등 관련 법령과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·지침에 따릅니다. 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여수시 해석에 따릅니다.